

1. 개정이유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을 석유판매업자가 대신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는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처분유형별 제재 수위에 따른 비례원칙 반영을 위한 등록의 취소 처분 공표기간 상향,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 보완,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자체 위탁 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류 석유제품 보관 예외 허용(안 별표1 행정처분기준)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에 한하여 석유판매업자가 타인의 석유를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

나. 전산보고하는 읍 지역 일반판매소의 주유소 거래 허용(안 제2조)

전산보고 시 주유소와 거래 가능한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

다. 등록의 취소 처분의 공표기간 상향(안 제46조의2 제2항 제3호)

처분별 수위 비례원칙 및 처분효과 적정성 개선을 위해 등록의 취소 처분 공표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

라.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 보완(안 별지 제37호 서식)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보고서식에 행정처분 공표연월일란 추가

마. 석유관리원 위탁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안 제48조 제1항 제3호)

기존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규정에 따라 보고하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 보고 근거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面) 지역”을 “(面) 또는 읍(邑) 지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제3호 중 “6개월”을 “2년”으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5)바)(4) 단서 중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한 경우와 영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매각 행정기관에서 압류한 석유제품을 자신의 석유와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하여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제4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쪽)

3. 신규등록, 휴업, 폐업 및 휴업사업 재개 업체의 명세

판매업의 종류	구분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변동사유발생 연월일

--	--	--	--	--	--

비고: 판매업의 종류에는 석유판매업[대리점(일반 및 용제),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주유소 및 판매소)으로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4.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및 공표 대상 업체 명세

판매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 연월일	공표 연월일

비고: 위반행위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공표 대상인 경우에는 공표연월일란에 공표일자를 기재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제2조(일반판매소) ----- ----- ----- ----- ----- <u>(面) 또는 읍(邑) 지역</u> ----- ----- ----- ----- ----- ----- ----- ----- -----.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2. (생략)

3.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④ (생략)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략)

3.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5항 및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1. 2. (현행과 같음)

3. -----
----- 2년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보고)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8항-----

에게 제출할 것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